

# 고교-대학연계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22. 3. 29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고교-대학연계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교-대학연계지원센터 운영 기획
2. 고교-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획
3. 고교학점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
4. 고교학점제 성과분석,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
5. 고교-대학 연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
6.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연구 및 행정인력)**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, 연구원,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5조(설치)**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교-대학연계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입학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22.12.14.>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고교학점제 운영, 성과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환류

**제9조(환류)**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재정 및 회계

**제10조(재정 및 회계)** 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교육기관 지원금과 본교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며,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11조(세부사항)** 그 밖에 센터 운영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22.12.1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